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0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'94. 1. .

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(대통령령 제14074호, '93.12.31)에 따라
- 동규정 [별표 9]의 장려수당지급대상중 일부항목의 지급액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

주요골자

- 장려수당지급항목 신설

수 당 지 급 대 상	지 급 액	비 고
시체화장업무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월 180,000원	현재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금액을 일률적명시(50,000원)
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월 150,000원	"
하수·폐수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 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월 120,000원	"

참고자료

- 관계법령 :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
- 예산조치 : 추경에 반영(중평출장소 5명분 6,000천원)

##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명칭중 “의료업무등의”를 삭제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장려수당)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·하수 폐수·쓰레기처리업무, 시체화장업무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[별표 3]과 같다.

[별표 3]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[별표 3]

### 장려수당지급구분표

지 급 대 상	지 급 액
시체화장업무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월 180,000원
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월 150,000원
하수·폐수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월 120,000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